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-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장기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- 효력발생일 : 2014. 10. 16.
- 정정 사유 :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
- 정정 내용

항목	정정전	정정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-	<a href="#">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a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<a href="#">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 추가</a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4. 7. 31.	<a href="#">2014. 9. 30</a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	<a href="#">트러스톤장기고배당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(주식)</a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2) 동일종목 투자	나) (2)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(3)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	나) (2)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 <a href="#"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</a> )  (3)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

	<p>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 시가총액비중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(<u>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</u>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)투자하는 경우</p>	<p>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 시가총액비중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(<u>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</u>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)투자하는 경우</p>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	-	<p>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전략 상세 기재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</p>	<p><u>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추가</u></p>
<p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	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</p>	<p><u>(2) 집합투자업자는 (1)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.</u></p>